

제223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5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쪽수
2017-2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7-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4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5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7-6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앴(안 제16조)

(법령 개정 전) 조례로 정하는 자

(법령 개정 후)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 현행 문구로는 조례로 명시된 자만이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례로 정하는 자”로 명확히 표현

※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 정비

나. 「양성평등기본법」 의무사항 반영(안 제24조)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순화(안 제8조, 제15조 ~ 제17조)

○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훼손·망실된 ⇒ 훼손되거나 없어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12. 7. ~ 12.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 (6) 경남도내 다른 시·군 조례 개정 현황
 - 개정완료: 해당없음(부산광역시 수영구 개정완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군수는 법”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항 중 “훼손·망실된”을 “훼손되거나 없어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5. 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제17조제2항 중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를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와 훼손될 거 같거나 없어질 것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u>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u>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1. ~ 4. (생략) 5. <u>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u> 6. ~ 7. (생략)</p>	<p>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u>① 영 제17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u> 1. ----- 2. ----- ----- ----- <u>②-----</u> ----- ----- 1. ~ 4. (현행과 같음) 5. <u>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주소시설에 대한-----</u> 6. ~ 7. (현행과 같음)</p>
<p>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생략)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u>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u>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와 훼손될 거 같거나 없어질 것이-----</u> -----</p>
<p>제24조(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② ~ ③ (생략)</p>	<p>제24조(구성) ① ----- ----- ----- ----- -----<u>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 ③(현행과 같음)</p>
<p>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② (생략)</p>	<p>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u><단서 삭제></u> ② (현행과 같음)</p>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국정시책 및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준공 등 대형시설 운영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별표 3)

○ 670명 → 676명(증 6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 6명

- 현행: 599명(본청263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8명, 읍39명, 면138명)
- 조정: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2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38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연 165,000천원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12. 07. ~ 12.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 불입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670명”을 “67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56명”을 “66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u></p>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70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656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p>	<p><u>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u>676명</u>-----</p> <p>-----</p> <p>1. -----<u>662명</u></p> <p>2. -----</p>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6 670	284 281	14	135 133	71 70	64 63	54 53	40	149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44 638	280 277	14	108 106	44 43	64 63	53 52	40	149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605 599	266 263	11	102 100	40 39	62 61	49 48	39	138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 관련조문: 제2조(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출	국비							
	군비		165	170	175	180	185	875
	소계(a)		165	170	175	180	185	875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165	170	175	180	185	875

3. 관련 의견

- 국책사업 및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준공에 따른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증가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증원 내역: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 연간 인건비 증가액: 165,000천원
 - 기본급 132,000천원, 수당 등 33,00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이화기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15.1.6.)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안 별표)

- 관외출장시 숙박비의 지역별 상한 기준액 정함
운임과 숙박비 정액지급 ⇒ 실비지급
- 숙박비 지급 기준을 국가직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구분	현 행					개 정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박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small>(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small>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나.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안 제5조제4호의2)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처예규)」에 따른 실비 지급규정 반영
- 다. 정부조직개편 사항 반영함(안 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 제16조, 제18조, 별표 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2. 9. ~ 12.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사항

○ 개정 중(입법예고):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의령군

거창군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예비조례”를 “거창군 지방공무원 예비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호 중 “제17조”를 “영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를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제1항 단서”를 “영 제18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를 “영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 1”을 “영 별표 1”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를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u></p>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u>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u></p> <p>2. <u>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u></p> <p>3. <u>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4. <u>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5. <u>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u></p> <p>6. <u>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u>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u></p>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 -----</p> <p>1. <u>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u></p> <p>2. <u>영 제17조</u>----- -----</p> <p>3. <u>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u> -----</p> <p>4. <u>영 제18조제1항 단서</u>----- ----- -----</p> <p><u>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u></p> <p>5. <u>영 제24조제5항</u>----- -----</p> <p>6. <u>영 제27조</u>-----</p>

현행	개정안
<p>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장" ----- ----- ----- -----</p>
<p>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p>	<p>8. 영 별표 1----- ----- ----- ----- ----- -----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p>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4조)
- 나. 건축위원회 기능 개정(안 제6조)
- 다. 건축위원회 회의 개정(안 제7조)
- 라. 건축위원회 자료제출의 요구 신설(안 제7조의2)
- 마.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신설(안 제13조의2)
- 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기준 개정(안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 사.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28조의2)
- 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완화 기준 신설(안 제35조2)
- 자. 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신설(안 제35조의3)
- 차. 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안 제40조)
- 카. 건축협정의 체결 신설(안 제41조의2)
- 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신설(안 제42조의2)
- 파.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신설(안 제42조의3)
- 하. 용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 기준 구체화(안 제43조제1항)
- 거. 부속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구체화(안 별표 3 비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1. 25. ~ 12. 15.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안 제8조)

(6) 도내 개정현황

○ 개정완료: 없음

○ 개정 중: 13개 시·군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건축조례”를 “거창군 건축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영 제5조의5제1항”으로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생략할 수 있다”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5조”를 “영 제5조5”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사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제7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있다.”를 “있다. 다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회 운영기준) 그 밖에 위원회 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7조 중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을”을 “제46조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5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예치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를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24조 중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제20조 및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8조 중 “제13호”를 “제15호”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별표 5의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6조제2항단서”를 “영 제8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로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영 제86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를 “영 제86조제3항제2호”로 하다.

제7장의2(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건축협정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공용주차장 및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

3. 건축협정 이행계획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제1항 중 “법 제80조제1항단서”를 “법 제8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0조제4항단서”를 “법 제80조제5항 단서”로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제4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유사한 것”을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사한 것”을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만의 건축물

나. 기존건축물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개축 건축물. 다만, 공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내 건축물은 기존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4. (생략)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

2. (현행과 같음)

② -----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 1.-----
- 2.-----

3. -----

-----영 제5조5-----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제7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예치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은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 제1항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 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

1. -----

2. -----

3. -----

③ -----
-----1년-----

④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가설건축물)

- ① (생략)
-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 6. (생략)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 제2항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 4. 법 제27조와 영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

제28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과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

제26조(가설건축물)

-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1. ~ 6.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20조

제28조(설계도서의 작성)

제15호

제28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별표 5의 건축공사감

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지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제35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제4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대지들 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의 부분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가 접하는 도로 중 가장 넓은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1.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대지 밖에 있는 대지 부분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용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③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

<삭 제>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단서 삭제>

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영 제86조제2항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영 제86조제3항제1호-----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1. ~ 2. (현행과 같음)

제7장의2 건축협정

제41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공용주차장 및 도로설치 등 공익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

3. 건축협정 이행계획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4항단서에 따라 제1항의 경우 총 부과 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신 설>

<신 설>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5항단서-----

제4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법 제20조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생략)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 4. (생략)

② (생략)

제3항을 위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1. -----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 -----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4미터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2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비고: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 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띄어야 하는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정이유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산업변화에 부응하여 향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노화, 향노화산업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군수는 거창군이 향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향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 한방약초 생산과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
- 향노화 힐링특구 지원

- 그 밖에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함(안 제6조)

-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 향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 향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 한방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 한방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 그 밖에 군수가 향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12조)

- 기능: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항노화 정책간담회 활동 등, 지원계획 수립·변경, 항노화산업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 구성 등: 20명 이내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2년 임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예산 408,000천원 예산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1. 29. ~ 12.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6) 전국 조례 현황: 제정 4건(부산, 제주도, 함양, 산청)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노화”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향노화산업”이란 향노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향노화를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제조·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향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3.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4.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한방약초 생산과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
6. 향노화 힐링특구 지원

7. 그 밖에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향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향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3. 향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4.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한방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6. 한방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7. 그 밖에 군수가 향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향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향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2. 향노화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활동
3. 지원계획 수립·변경
4. 향노화산업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향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향노화산업 담당과장, 향노화산업 관련 담당공무원
2. 향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향노화 관련 학과 대학교수 및 강사
4. 향노화 관련 기업체 대표 및 단체·법인 대표
5. 향노화 관련 경작 농업인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향노화산업 담당주사로 한다.
- 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향노화사업 지원, 거창군 향노화지원위원회 운영 수당

○ 관련조문: 제6조, 제1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408	165	135	20	20	748
세출	군 비	408	165	135	20	20	748
	소계(a)	408	165	135	20	20	748
세입	0						
	소계(b)						

3. 관련 의견

- 향노화산업을 위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이 매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인력육성 육성, 향노화제품 연구개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임.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합 계	408	165	135	20	20	748
약초마을 조성 약초종묘 구입 (가북면)	32	0	0	0	0	32
한방 웰니스 관광사업 자본금(경남도 추진)	100	0	0	0	0	100
감악산 향노화 웰니스 체험 관광지 조성(경관약초, 화초 등)	101	20	20	20	20	181
감악산 향노화 웰니스 체험 관광지 조성(산채약초 공동 시범단지 조성)	65	65	35	0	0	165
향노화제품 개발	50	50	50	0	0	150
향노화 프로그램 개발	60	30	30	0	0	120

2. 사업효과

- 이 사업 추진에 따른 직접적인 관광객 입장료 수입 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창군 방문 관광객 유치에 따른 부가적인 소득창출 가능
- 산채약초 공동시범단지 조성으로 약초재배 단체 소득 창출 기반조성
- 향노화 제품개발로 관내 약초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노화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다양한 힐링 체험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제고

작성자: 향노화산업과장 이 규 석